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명숙 의원)

의안 번호	417
----------	-----

발의연월일: 2016. 6. 3.

공동발의자: 김명숙, 이정식, 유인애,  
한동진, 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 1. 제안이유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직무 (안 제4조)

라. 해설사의 선발, 해설사증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 해설사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마. 예산 지원 관련(안 제9조)

바. 사무위탁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나. 예산조치: 필 요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해설사 선발 등)**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과 함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

# 관계법령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 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55호

-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계획 수립 의무화

#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5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55호, 2012. 1.2 시행)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3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공사 담당(팀장급)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인증심사위원회 운영) ①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인증심사의 절차) ① 공사 사장은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을 신청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6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④ 공사 사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



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나. 교육내용 : 아래의 구성형식을 갖춘 교육과목별 세부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 항목
(1) 제목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3) 요약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4) 진행과정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목표 ○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 기대효과 ○ 교육교재,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한 교육과목 내 여러 개의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과목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해당 교육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다. 평가방법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 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가. 강사자격 : 각 교육과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사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교육교재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목별로 적정한 교육교재(활동지, 활동자료 포함)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교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가. 강사구성 :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해당 교육과목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공무원
- (3) <삭 제>

나. 교육시설 현황 :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시설을 갖춰야 한다.

- (1) 강의실 :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 단,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하여야 함
- (2) 강사대기실 및 회의실
- (3) 교육기자재 : 강의실 내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음향시설 구비

다. 교육시설은 교육 기간 중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